

의안번호	2205706
의 퇴 인	박해철 의원
회 답 일	2025.1.6.
추 계 번호	24B5239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숙사 지원 사업을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원, 2030년 19.5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1.2억원(연평균 14.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(안 제22조의3)	2.0	10.7	19.5	19.5	19.5	71.2	14.2

주: 1.국비 및 지방비의 합계액임

2.지방자치단체의 기숙사 설치 의지 등 행태 변화 등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3 (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) 신설	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2조의3 (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) 신설	○	- 유사사례 참고 -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본 추계서는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“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”의 사례를 토대로 산출

-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에 대해 산출

- 본 추계서는 2024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 사업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서, 실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- 개정안의 시행으로 운영비 등이 소요될 수 있으나, 이러한 요인에 의한 재정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

[농림축산식품부 “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” 개요]

- 사업명: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¹⁾의 내역사업
- 목적: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을 개선
- 연차별 재정소요: 1년차(10.0%), 2년차(45.0%), 3년차(45.0%)
 - * 1년차: 공공건축기획·심의, 설계기획 등 행정절차
 - * 2년차: 착공
 - * 3년차: 준공
- 지방비 비중: 국비 50%, 지방비 50%
- 사업 형태: 자치단체자본보조²⁾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 수에 외국인가숙사 개소당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

1) 사업코드: 1140-333

2) 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부, 「2025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-1」, 2024.

- (지원대상) 본 추계서는 특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·도를 제외한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하되, 매년 1개 지역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－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남도, 충청북도, 경상남도, 경상북도, 전라남도, 전라북도
 - － 본 추계서는 공모 등을 통해 2026년에 첫번째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며, 부지선정 지연이나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사업이 순연될 경우 사업비가 이월될 수 있겠으나 3년 내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가정
- (지원단가) 2024년 예산액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“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”의 연차별 투입액 및 개소당 지원단가를 준용하여 산출
 - － 지원단가: 3년간 개소당 평균 19.5억원(거점형 24억원, 마을형 15억원)
 - * 1년차(10.0%): 1.95억원(거점형 2억4,000만원, 마을형 1억5,000만원)
 - * 2년차(45.0%): 8.78억원(거점형 10억8,000만원, 마을형 6억7,500만원)
 - * 3년차(45.0%): 8.78억원(거점형 10억8,000만원, 마을형 6억7,500만원)³⁾
 - ※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

[표 2] 기숙사 제공 사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지원대상							
1년차(A1, 개)	1	1	1	1	1	—	—
2년차(A2, 개)	—	1	1	1	1	—	—
3년차(A3, 개)	—	—	1	1	1	—	—
지원단가							
1년차(B1, 백만원)	195	195	195	195	195	—	—
2년차(B2, 백만원)	878	878	878	878	878	—	—
3년차(B3, 백만원)	878	878	878	878	878	—	—
추가재정소요							
1년차(C1=A1×B1, 백만원)	195	195	195	195	195	975	195
2년차(C2=A2×B2, 백만원)	—	878	878	878	878	3,510	702
3년차(C3=A3×B3, 백만원)	—	—	878	878	878	2,633	527
합계(D=C1+C2+C3)	2.0	10.7	19.5	19.5	19.5	71.2	14.2
국비(D1=D×50%)	1.0	5.4	9.8	9.8	9.8	35.6	7.1
지방비(D2=D×50%)	1.0	5.4	9.8	9.8	9.8	35.6	7.1

주: 1.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률에 따라 각각의 지출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, 공사 규모 및 연차별 지원 비율 등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

2.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3) 농림축산식품부, 「2025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-1」, 2024.

-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숙사 지원 사업을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원, 2030년 19.5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1.2억원(연평균 14.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(안 제22조의3)	2.0	10.7	19.5	19.5	19.5	71.2	14.2

주: 1.국비 및 지방비의 합계액임

2.지방자치단체의 기숙사 설치 의지 등 행태 변화 등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률에 따라 각각의 지출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, 향후 실제 공사 규모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
 - 본 추계서에서 가정한 연차별 지원비율이 달라질 경우 연도별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며, 기숙사 설치 물량 및 연도별 지원비율 등에 따라 추계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